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지 방 공 무 원 수 당 등 에 관 한 규 정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주요내용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인력의
처우개선을 위하여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 및 비상근무수당
지급 상한액을 인상하는 한편,

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육아
휴직수당 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
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”를 각각 “장애가 있는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”를 “장애가 있는 사람과”로,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”을 “장애가 있는 사람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”라 함은”을 ““장애가 있는 사람”이란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”을 “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,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.

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“제1항제2호”를 “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“6개월째까지: 제1항제1호”를 “12개월째까지: 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경우(육아휴직 종료일에 당면퇴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”를 “경우와 별정직공무원이 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」 제12조에 따라 면직(육아휴직 종료일에 당면퇴직 또는 면직

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는 경우”로 한다.

제19조제10항 중 “지급”을 “별도로 지급”으로 한다.

제21조의3제1항 본문 중 “시간외근무수당,”을 “시간외근무수당, 제16조에 따른 야간근무수당, 제17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”으로, “정액급식비”를 “정액급식비, 제18조의5에 따른 연가보상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별표 8 제9호라목 중 “단속업무”를 “단속 및 시설물(교량·터널 등) 안전 점검 업무”로 한다.

별표 9의 기술분야의 제2호다목부터 2)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1) 중 “50,000원”을 “100,000원”으로 하고,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의 제11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차. 직무의 중요도, 난이도,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4급 상당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(정원의 15퍼센트 범위 내)	1) 월 지급 상한액	
	지급대상	월 지급 상한액
	4급(상당) 공무원	200,000
	5급(상당) 공무원	150,000
	6급(상당) 이하 공무원	100,000
	2) 지급방법: 구체적인 지급대상, 지급액, 지급기준, 지급기간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.	

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의 제13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1)을 다음과

같이 한다.

1) 지급액: 1일 8,000원(월 80,000원 이하)

별표 14의 6급(상당), 연구사, 지도사(3호봉 이상),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(제6호), 일반임기제공무원(7급 상당), 지방전문경력관 나군의 월 지급액란 중 “165,000원”을 “175,000원”으로 하고, 같은 표 7급(상당), 일반임기제공무원(8급 상당)의 월 지급액란 중 “155,000원”을 “165,000원”으로 하며, 같은 표 8·9급(상당), 지도사(2호봉 이하), 일반임기제공무원(9급 상당), 지방전문경력관 다군의 월 지급액란 중 “145,000원”을 “155,0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)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)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 시간당 지급액이 「최저임금법」 제5조에 따라 산정한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지급액보다 적은 직급의 초과근무수당 시간당

단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지급액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<u>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</u> 3.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<u>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</u> 4.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<u>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</u>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<u>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</u>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서 “<u>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</u>”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1. ~ 6. (생략) ④ ~ ⑪ (생략) 제11조의2(육아휴직수당) ①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<u>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 <단서 신설></u>	----- <u>장애가 있는 사람</u> 3. ----- ----- ----- <u>장애가 있는 사람</u> 4. ----- -- <u>장애가 있는 사람과</u> ----- ----- ----- <u>장애가 있는 사람인</u> ----- ----- ③----- “<u>장애가 있는 사람</u>”이란 -----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④ ~ ⑪ (현행과 같음) 제11조의2(육아휴직수당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 <u>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</u> ----- . 다만,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
---	---

1.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
까지: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
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
에 해당하는 금액. 다만, 해당
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
에는 150만원으로 하고, 해당
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
에는 70만원으로 한다.

2.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
휴직 12개월까지:육아휴직 시
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
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.
다만,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
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
하고,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
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
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
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
 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
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
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

1.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

에는 150만원으로 하고, 해당
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
에는 70만원으로 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② -----

 -----.

1. -----

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
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
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
원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
산정한 금액

가. (생략)

나.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
개월째까지: 제1항제2호에
따른 금액
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
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
는 공무원: 다음 각 목의 구분
에 따라 산정한 금액

가. (생략)

나.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
개월째까지: 제1항제1호에
따른 금액

다.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
개월째까지: 제1항제2호에
따른 금액

③ (생략)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
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
해당하는 금액(제3항 단서의 경
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
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제1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
----- 제1항 -----

2. 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 12
----- 개월째까지: 제1항 -----

<삭 제>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)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. 다만,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기 전에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1조제2호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(육아휴직 종료일에 당연퇴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.

⑤ ~ ⑧ (생략)

제19조(수당등의 지급방법) ① ~ ⑨ (생략)

⑩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·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,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·관리업무수당·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

-----.

----- 경우와 별정직 공무원이 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」 제12조에 따라 면직 (육아휴직 종료일에 당연퇴직 또는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는 경우---.

⑤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수당등의 지급방법) ① ~ ⑨ (현행과 같음)

⑩-----

----- 별도로 지

아니한다.

⑪・⑫ (생략)

제21조의3(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) ①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,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,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. 다만, 가족수당은 전일제 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,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의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면 209분의 1의 100퍼

급-----.

⑪・⑫ (현행과 같음)

제21조의3(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) ① -----

----- 시간외근무수당, 제16조에 따른 야간근무수당, 제17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--- 정액급식비, 제18조의 5에 따른 연가보상비 -----

---. -----

-----.

<삭 제>

<u>센트부터 150퍼센트까지의 범 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 다.</u> 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---	----------------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353